

1. 개정이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상향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주변 특별시·광역시 및 도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2023.5.30. 공포, 2023.7.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상향 규정
(안 제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운행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종전에는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상향 규정함.

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조정(안 제6조)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이에 준하는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의 관할 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1.5. ~ 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대”를 “1대(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100명당 1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7항”을 “법 제1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준하는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교통약자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통약자가 해당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의2 중 “(제6조제3항 후단 관련)”을 “(제6조제4항 후단 관련)”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u>1대</u> 를 말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 ----- ----- ----- ----- ----- 1대(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100명당 1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u>법 제16조제7항에 따라</u>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u>법 제16조제8항</u> ----- ----- ---. <u>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u>	2. <u>제1호에 준하는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사람</u>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u>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u><신 설></u> <u>②</u> · <u>③</u> (생 략)	<u><삭 제></u> 3. ----- <u>제2호까지</u>----- ----- ----- <u>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교통약자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통약자가 해당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u>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